제284회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225)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226)

검토보고서

2018. 11. 28.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225 226

I. 제출자 및 제출경과

1. 서울특별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가. 의안번호 : 225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다. 제출일자 : 2018년 10월 17일

라. 회부일자 : 2018년 10월 29일

2.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가. 의안번호 : 226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다. 제출일자 : 2018년 10월 17일

라. 회부일자 : 2018년 10월 29일

Ⅱ. 제안이유

1. 서울특별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가.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의거 설치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음
- 나.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전문기관 및

단체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 자 함.

2.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가. 광역치매센터 사무는 「치매관리법」제20조(위임과 위탁),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제7조2(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및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4조에 의하여 민간위탁 으로 운영 중인 사무로서
- 나. 전문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치매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지원 할 위탁운영사업자와 재계약하기 위해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회동의를 받고자 함.

Ⅲ. 주요내용

- 1. 서울특별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가. 위탁 사무명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사업을 수행하며, 25개구의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수장 역할을 하여야함
 - 정신건강증진 사업추진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성 강화로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 위탁사무 내용

- 중증정신질환자의 회복 및 사회복귀지원 사업
- 초발정신질환자 만성화 예방 및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 정신보건서비스 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활성화 등 연구지원
- 알코올 등의 중독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 정신건강분야 기초조사 및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 정신건강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사업, 정신보건사업지원단 운영 지원
- 정신보건사업 정책연구 및 평가, 교육사업.
- 정신장애인 복지 및 자립재활 주거지원
- 라.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 시 설 명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동숭3길 40 일석기념관 3층~4층
 - 시설규모 : 면적 695.8 m²(211평)
 - 3층:347.92m²(105.4평), 4층:347.92m²(105.4평)
 - 지원시설 : 정신건강복지센터
 - 개소일자 : 2005년 1월 27일
- 마. 민간위탁기간 : 2019. 3. 1.~2021. 12. 31.
- 바.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재위탁)
-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예산안검토 및 협의과정에서 수정될수 있음)
 - 소요예산(2019년) : 3,035백만원(시비100%) -인건비(1.645만원).사업비(1.064백만원). 관리비(326백만원)

2.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가.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운영 민간위탁

나. 시설개요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90 여전도회관 1층(임 대)
 - 시설규모 : 310.77 m²
 - 현 수탁기관 : 서울대학교병원(2017.4.1.~2018.12.31.)
 - 운영인력 : 총 10명(센터장 1 사무국장 1, 팀원 8)

다. 위탁내용

- 위탁기간 : 3년(2019.1.1. ~ 2021.12.31.)
- 위탁사무
 - 치매관련 대책수립 및 치매관리사업 기획
 - 치매관런 자원조사, 치매관리사업 수행기관 인계 및 기술지원
 - 치매관련 종사자 전문교육 및 훈련
 - 치매관련 연구사업 및 치매인식 개선사업
- 치매관리법 제 6조에 따른 서울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 계획 수립 및 지원
 - 서울특별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치매관리 사업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재계약
- 소요예산 : 총 854,404천원(2018년) 국비 477.143천원(55%). 시비 377.261천원(45%)

라.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현황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치매관리법」제20조(위임과 위탁)
 -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제7조 2(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4조(운영의 위탁)

- 민간위탁 추진현황
 - '07.01.01.~'08.12.31. : 1차 위탁관리(2년, 서울대병원)
 - '09.01.01.~'10.12.31. : 2차 위탁관리(2년, 서울대병원)
 - '11.01.01.~'12.12.31. : 3차 위탁관리(2년. 서울대병원)
 - '13.01.01.~'15.01.04. : 4차 위탁관리(2년, 서울대병원)
 - '15.04.01.~'16.12.31. : 5차 위탁관리(1년9개월, 서울대병원)
 - '17.04.01.~'18.12.31. : 6차 위탁관리(1년9개월. 서울대병원)

마. 민간위탁 필요성 및 기대효과

- 필요성
 - 치매관리사업 지원 및 관리 사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사업추진의 전문성 확보 및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함
- 기대효과
 - 전문적인 사무 운영·관리에 따른 서비스 품질 향상

IV. 참고사항

1.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가. 관계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제15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 ②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에서의 법제12조제2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 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광역정신 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 ① 시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광역 정신건강 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정신건강증진 시설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O「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
 -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 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나. 예산조치 (2018년)

: 3.018백만원 (시비100%)

-인건비(1,578백만원),사업비(1,090백만원), 관리비(350백만원)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2.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가. 관계법령

○「치매관리법」제20조(위임과 위탁)

제20조(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제7조2

제7조2(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②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 라 한다)에게 그 업무의 위탁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이 별표 2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충족한 경우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⑤ 시·도지사는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9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15.]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4조

제4조(운영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광역치매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으로 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를 모두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문의를 둔 기관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5.14〉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 1. 사무를 위탁하는 기관 및 수탁기관 또는 단체
- 2.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 3.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방법
- 4. 위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에 드는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 5. 그 밖의 사무위탁에 필요한 사항
- 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 단,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려는 경우 위탁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탁 연장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예산조치 : 총 854,404천원(2018년)

국비 477,143천원(55%), 시비 377,261천원(45%)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Ⅱ.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정창훈)

1 동의안 제출 개요

○ 본 검토보고의 대상이 되는 민간위탁 사무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 31) 및 「치매관리법」제20조(위임과 위탁)²)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제 15조 등에 의하여 민간위탁 대상 사무이자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출대상 이나 동 동의안은 예산편성전 사전절차로서 제283회에 제출되었어야 함 에도 불구하고 제284회에 제출되어 예산편성전 사전절차 미이행 사항으 임.

2 동의안 대상사무 검토

가.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는 시장은 법령 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 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하여 민간위탁할 수 있는 사무를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부칙 < 제65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회동의 절차의 특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무의 경우 제4조의3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례 공포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치매관리법」제20조(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보건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치매관 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¹⁾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 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판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생략 ④ 생략

-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로 규정하고 있음.
- 동 검토보고의 대상이 되는 사무는 모두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과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지원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으로
 - 사회복지사, 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간호사 등 전문인력의 참여를 요구하며 시설장을 의료인(의사)가 하는 등의 제한조건으로 인해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볼 수 있다고 하겠음.

나. 서울특별시 정신건강복지센터

현재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수탁받아 추진하고 있고, ①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②정신보건사업지원단 운영을 주요한 사업범위로 하며, 위수탁 협약기간을 2016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3년간)으로 체결하여 운영 중임.이 수탁기간이 2019년 2월 28일 종료됨에 따라 본 동의안이 제출되게되었음.

구 분		세 부 내 용		
위탁사무 명칭		서울시 정신건강증진센터3)		
서울시주관부서		보건의료정책과		
수탁기관	수탁기관명	서울대학교병원		
구락기킨 	소재지	서울 종로구 동숭3길 40		
운영현황	인력규모	(2018년 기준) 총 39명, 정규직 39명, 비정규직 0명		
	예산규모	(2018년 기준) 3,018백만원		
위수탁 협약서 상 사업범위		□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 중증정신질환 관리사업, 조기정신질환 관리사업, 중독관리사업		

- 취약계층 지원사업, 정신건강인식개선 및 증진사업 -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리체계 구축/ □ 정신보건사업지원단 운영 - 정책연구사업, 평가사업, 교육사업, 발간사업, 연구조사 사업 - 정신보건정보관리 및 DB구축 사업, 국제협력 사업, 홍보지원	
위탁기간	2016년 3월 1일~2019년 2월 28일

 민간의 전문자원을 이용하는 것은 민간위탁의 타당성을 보여준다 할 것인데 외부기관 평가에 의하면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을 시 76.22 점으로 나타나 민간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인가에 대한 일부 의구심이 있음.

평가영역	평가범주	평가지표	지표배점	세부배점	득점
		1-1. 조직 및 인력 운영	12.00점	-	
		1-1-1. 조직구성 및 인력운영 적정성	-	2.50점	
	1. 사업인프 라	1-1-2. 사업운영의 전문성 보유	-	2.50점	2.19점
		1-1-3.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 노력		7.00점	2.80점
		1-2. 재정구조 및 예산집행 효율성	10.00점	-	
		1-2-1. 민간위탁금 관리의 적정성	-	6.00점	3.45점
		1-2-2. 사업예산집행의 효율성	-	4.00점	2.50점
		1-3. 사회적 가치 기여	5.00점	-	
공통		1-3-1. 사회적 기업 등 물품구매 노력	-	2.50점	1.69점
사무		1-3-2. 지역민간전문가 활용 노력	-	2.50점	1.94점
평가		2-1. 사업계획 집행수준	5.00점	-	
0.1		2-1-1. 사업계획의 적정성	-		1.16점
		2-1-2. 시설 및 기가재 활용도		1.50점	1.16점
	2. 사업활동	2-2-3. 사업운영 자체점검활동 및 관련규정 준수	_	1.00점	0.78점
		수준			
		2-2-4. 사업관리 운영의 투명성	_	1.00점	0.58점
		2-2. 사업활성화 개선노력	5.00점		
		2-2-1. 사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노력	-		1.45점
		2-2-2. 이해관계자 협조체계 구축	-		1.16점
		2-2-3. 사업마케팅 및 홍보노력		1.50점	1.16점
	3. 사업성과	3-1. 사업성과 평가결과(합계)	40.00점	-	
		3-1-1. 발견, 치유, 예방	10.00점	-	
		①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노력도	-	2.00점	1.28점
711 444		② 사업성과지표에 대한 목표 적절성	-	2.00점	1.45점
개별		③ 아동청소년 고위험사례 발견	-	1.50점	1.50점
사무		④ 정신건강예방교육 참여자 수	-	1.50점	1.45점
평가		⑤ 조기정신증 발견	-	1.00점	0.93점
		⑥ 조기정신증 개입	-	1.00점	0.90점
		⑦ 조기정신증 예방	-	1.00점	0.97점
		3-1-2. 정신건강 질관리	6.00점	-	
	1	·			

³⁾ 위탁당시에 센터명으로 현재와는 다름.

		①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노력도	-	1.20점	0.84점
		② 사업성과지표에 대한 목표 적절성	-	1.20점	0.87점
		③ 컨설팅 사전대비 평가점수 증가율	-	1.20점	1.20점
		④ 집합교육 만족도	-	1.20점	1.04점
		⑤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분석 기관 수	-	1.20점	1.20점
		3-1-3. 회복 당사자 참여 및 인권 옹호	14.00점	-	
		①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노력도	-	2.80점	2.06점
		② 사업성과지표에 대한 목표 적절성	-	2.80점	2.02점
		③ 시범사업 참여기관 수	-	1.40점	1.40점
		④ 회복상담가 활동건수	-	1.40점	1.40점
		⑤ 중독대상자 상담건수	-	1.40점	1.40점
		⑥ 중독대상자 단기회복률	-	1.40점	1.40점
		⑦ 당사자 인권강사 양성프로그램 및 지원 횟수	-	1.40점	1.33점
		⑧ 정신장애인 인권톡 방송횟수	-	1.40점	1.26점
		3-1-4. 서울시민 정신건강 인식개선 및 행동변화	10.00점		
		①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노력도	-	2.00점	1.40점
		② 사업성과지표에 대한 목표 적설정	-	2.00점	1.48점
		③ 서울시 정신건강브랜드 블루터치 인지도	-	1.50점	1.50점
		④ 서울시민 정신건강 서비스 인지도	-	1.50점	1.50점
		⑤ 온라인 자가관리 프로그램 시민 참여도	-	1.50점	1.50점
		⑥ 정신건강 문화조성을 위한 시민 참여도	-	1.50점	1.50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노력	3-2. 대외적 우수사례(Best Practice) 성과창출 수준(합계)	3.00점	-	2.10점
개별	4 71 - 71 71	4. 지도점검 이행노력 평가결과(합계)	5.00점	-	
사무	4. 지도점검 이행노력 5. 만족도 제고노력	4-1. 지도점검 이행률	-	2.50점	2.50점
평가		4-2. 지도점검 이행노력	-	2.50점	2.00점
ILQTL		5. 시민만족도 평가결과(합계)	15.00점		
사용자 만족도		5-1. 시민 만족도 조사(전화조사)	-	10.00점	미실시
건국포	세고도덕	5-2. 시민 만족도 제고 노력	-	5.00점	3.75점
		1. 임금체불(사전협의된 임금미지급), 세금체납	-	-	
		2. 수탁사무 종사자의 퇴직금 및 4대보험 미지급	-	-	
감	점사례	3. 협약사항 위반(제 3자 위탁 금지, 협약이행 보증내용 위반 등)	-	-	
		4. 위탁사무 지연처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 등 부당취득	-	-	
		5. 위탁사무 내용 이외의 시설, 장비, 예산 사용	-	-	
합계			90점 기준 : 68.59점 100점 환산점수 : 76.22점		

○ 위와 같은 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부대의견으로는 조직운영과 관련하여 매년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상황변화에 대한 조직의 대응이란 점에서 우수하지만, 사업과 업무의 안정성 및 지속성을 확보하는데 긍정적이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안정적 조직운영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지 않는 점, 시계열적인 정보에 의하면, 사업의 연속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외부의 평가위원들이 지적하고 있음.

- 다만 동일한 평가에서 자격증 소지의 기준으로 본 기관 구성원들의 필수 전문성은 확보되어 있으며, 수탁기관의 사업 관련 전문성 역시 우수함. 또한 개인의 역량개발을 기관의 역량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필요교육에 대한 수요를 확인함으로써 개인별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한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점이 우수하다는 평이 있음. 이러한 이유로 민간위탁을 통한 전문성은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해당 평가에서 지적하고 있는 점은 대부분 조직운영의 안정성, 사업진행이 4분기에 집중되고 있는 점 등으로 집행부가 이들로 하여금 연중적절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분기, 반기 별로 확인하여 사업진행의 적절성을 확보해야 할 것임.

다.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수탁받아 추진하고 있고, ①치매관련 대책수립 및 치매관리사업 기획, ②치매관련 자 원조사, 치매관리사업 수행기관 인계 및 기술지원, ③치매관련 종 사자 전문교육 및 훈련, ④치매관련 연구사업, ⑤치매인식 개선사 업, ⑥치매관리법 제6조에 따른 서울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 계획 수립 및 지원, ⑦서울특별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치매 관리 사업을 주요한 사업범위로 하며, 위수탁 협약기간을 2016년 1 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으로 체결하여 운영 중임.

구 분		세 부 내 용
위탁사무 명칭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서울시주관부서		건강증진과
수탁기관	수탁기관명	서울대학교병원
	소재지	종로구 율곡로 190

운영현황	인력규모	(2018년 기준) 총 11명, 정규직 10명, 비정규직 1명
	예산규모	(2018년 기준) 854,404,000원
위수탁 협약서 상사업범위		□ 치매관련 대책수립 및 치매관리사업 기획 □ 치매관련 자원조사, 치매관리사업 수행기관 인계 및 기술지원 □ 치매관련 종사자 전문교육 및 훈련 □ 치매관련 연구사업 □ 치매인식 개선사업 □ 치매관리법 제6조에 따른 서울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 계획 수립 및 지원 □ 서울특별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치매관리 사업
위탁기간 2016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2016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 광역치매센터에 대한 외부기관 평가결과 100점 환산에서 95.8점을 획득하는 등 외부기관의 높은 평가가 있었음. 주로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항목들은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는 자치구 치매지원센터 및 정신건 강복지센터 운영과 서울시보라매병원 운영 등 유사 사업수행 경험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치매관련 학회 및 세미나 참석 등 역량강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점 등으로 인한 전문성 확보 측면, 높은 수준의 정규직 비율(90.9%), 외부자문 등으로 인한 사업의 적정성 확보 노력 등임.
- 주로 미흡하다고 지적받는 부분은 보건복지부 운영지침 상 팀장 직제를 운영할 수 없는 것으로 명시(지침 상에서는 사무국장 1인 이하 모두 팀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함에 따라 팀제를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팀장이라는 직책의 운영이 되지 않는 점, 사업의 계절성으로 인해 예산집행이 3분기와 4분기에 집중되는 점, 홍보사업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이 지적되었음. 팀제와 관련한 부분은 보건복지부의 사업지침상의 문제이므로 동 센터의 내부적 문제는홍보역량 부족과. 예산 집행의 계절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음.

3 동의안의 법률적 검토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조례')」가 개정(2017.07.13.)되어 개정 내용에 따르면 종전에는 민간위탁사무를 재 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지 않고, 의회 보고로 갈음하였으나, 개정된 조례는 의회의 동의를 (한 번도) 얻지 않은 민간 위탁사무의 경우에는 개정조례 공포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개선되었음.
- ※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의회의 동의절차가 최초로 규정된 2012년 12월 개정안 이 공포되기 이전에 체결된 민간위탁사무의 경우에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방식으로 연속하여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해당 사무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 절차를 통해 견제·감독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부칙을 통해 의회 민간위탁 동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사료됨.
- 동 동의안은 관련 법률과 조례를 준수하여 제출된 안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다만 서울시 예산편성지침 등과의 관계 고려가 필요한 상황임. 서울시 예산편성지침은 민간위탁 사무의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앞서 민간위탁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예산안의 제출일이 2018년 10월 31일이고 본 검토보고서의 대상이 되는 사무 2개의민간위탁 동의안 제출시기는 10월 17일인 점 등은 동 사무의 예산편성에 앞서 민간위탁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이후 민간위탁 동의를 받는 과정으로 설명하는 것만이 합리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된 사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 ※ 다만, 법률적 강제가 아닌 권장사항인 점은 고려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할 것임.

대 상	심사대상 및 내용	심사시기	심사내용	관련근거	관련 부서
민간위탁 의회동의 및 보고	한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 <u>예 산편성</u> 전	- 민간위탁 의 적정성 등	- 서울특별 시 행정 사무 민 간위탁 관리조례 제4조의3	조직 담당관

4 종합의견

- 지난 제283회 임시회를 통해 법률적인 하자 치유를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한 바 있으나, 금번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의 안이한 사무처리방식에 대하여 의회가 사후적 처리를 할 수 있는 관례를 다시한 만들어 주는 상황이 됨. 이러한 사항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의회의 권한인 예산심의권까지 훼손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됨.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반복할 경우에 대비한 입법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할 것임.
- ※ 민간위탁사무 동의 절차를 밟지 않은 등 흠결 있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직영 사무로 전환하는 등의 법적 강제 사항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임.